

# 훈련위탁 계약서

위탁사업주(갑)

훈련기관(을) 주식회사 이든에듀원격평생교육원

위탁교육내역

## 1. 계약의 범위

"갑"(위탁사업주)이 위탁한 훈련과정 및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다

훈련과정명	고용보험 적용여부	훈련일정	1인당 훈련비	훈련인원

## 2. 계약

계약에 따른 총 훈련비는(₩39,900원)이며, 이 중 '갑'(위탁사업주)의 자기부담금은(₩3,990원)으로 훈련 시작 전 입금하여야 한다. 훈련 종료 후 미수료자의 훈련비는 '갑'(위탁사업주)이 부담하여야 하며 훈련 변경신고 기간 내의 인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. 변경신고 기간이후에 변경인원이 발생할 때에는 변경신고가 불가하며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[계좌번호:351-1811-8441-88 /은행명: 농협/예금주: 주식회사 이든에듀]

## 3. 계산서 발행

교육시작 전 계산서는 산업인력공단 공문에따라 산업인력공단 제출, '을'(이든에듀)는 '갑'(위탁사업주)에게 교육진행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한다.

교육종료 후 계산서는 산업인력공단 공문에 따라 '을'(이든에듀)는 '갑'(위탁사업주)에게 수료생, 미수료생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한다.

## 4. 수료

을'(이든에듀)은 훈련과정 인정(또는 지정) 상의 훈련 수료 기준을 충족한 수료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. (100% 이상 출석 및 시험, 과제, 산행평가 환산점수 60점 이상 시 해당 수료)

## 5. 성실의무

가. '갑'(위탁사업주)과 '을'(이든에듀)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.

나. '갑'(위탁사업주)은 '을'(이든에듀)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훈련이 이행 될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 할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훈련비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.

다. '을'(이든에듀)이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귀책사유로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'갑'(위탁사업주)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수 없는 경우에 '을'(이든에듀)이 책임을 진다.

라. '갑'(위탁사업주)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'을'(이든에듀)에게 교육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할 경우 '갑'(위탁사업주)이 책임을 진다.

## 6. 개인정보동의

계약서상의 교육생 개인 및 교육 관련은 정보의 교육실시신고,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하여 정부 또는공공기관 등에 제공됨을 동의한다.

## 7. 해석 및 합의

본 계약서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,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.

## 8. 기준근로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 합의

당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'갑'(위탁사업주) 및 '갑'(위탁사업주)이 위탁한 근로자(훈련생)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 등 일체의 조건이 없음을 상호 합의한다.

2020년 1월 17일			
위탁자		수탁자	
회사명		회사명	(주)이든에듀
주소		주소	경남 진주시 사들로 16 어빌리티 305호
대표자	(인)	대표이사	박진현 (인)

TEL: 1811-8441 FAX: 055-755-4700

